

제17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1. 7. 12.)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등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노해]

【 목 차 】

I	검토경과	1
II	제출근거	1
III	세입·세출예산 결산총괄	1
	1. 세입결산(총괄)	1
	2. 세출결산(총괄)	2
	3.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	2
	4. 일반회계 세입결산	2
	5. 일반회계 세출결산	3
	6.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	4
	7. 계속비 결산	5
	8. 다음연도 이월사업	6
IV	예비비결산	6
V	기금결산	7
VI	채권액결산	8
VII	보조금결산	8
VIII	기타 검토의견	9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등 2건]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제출일자: 2011. 7. 4.
- 제출자: 거창군수
- 회부일자: 2011. 7. 4.
- 의안번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2011 ~ 40호)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2011 ~ 41호)

II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제30조(결산서의 작성)
-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III 세입·세출예산 결산(총괄)

1. 세입결산(결산서 p13)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처분	이월	C/A	C/B
계	434,989	430,102	425,332	4,770	851	3,919	97.8%	98.9%
일반회계	379,248	373,395	369,411	3,984	791	3,193	97.4%	98.9%
특별회계	55,741	56,707	55,921	786	60	726	100.3%	98.6%

2. 세출결산(결산서 p15)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A)	예산성립 후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위액 (D)	지출액 (E)	다음연도 이월액 (F)	불용액 G=C-E-F	미수납액 G/C (%)
계	377,837	57,152	434,989	392,536	359,356	46,862	28,771	6.6%
일반회계	329,262	49,986	379,248	352,877	326,650	39,466	13,132	3.5%
특별회계	48,575	7,166	55,741	39,659	32,706	7,396	15,639	28.1%

3.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결산서 p17)

(단위: 백만원)

구분	세입 결산액 (A)	세출 결산액 (B)	차인잔액 (A-B)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425,331	359,355	65,976	20,058	14,095	12,709	1,370	17,744
일반회계	369,410	326,650	42,760	19,123	13,253	7,090	1,342	1,953
특별회계	55,921	32,705	23,216	935	842	5,619	28	15,791

4. 일반회계 세입결산(결산서 p23)

(단위: 백만원)

과목	구분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C)	미수납액처리		비율 B/A
					결손처분	익년도이월	
계		373,395	369,411	3,984	791	3,193	98.9%
지방세		20,191	18,870	1,321	284	1,037	93.5%
	보통세	18,484	17,703	781	188	593	95.8%
	목적세	986	943	43	-	43	95.6%
	과년도수입	721	224	497	96	401	31.1%
세외수입		64,167	61,504	2,663	507	2,156	95.8%
	경상외수입	5,143	5,131	12	-	12	99.8%
	임시외수입	59,024	56,373	2,651	507	2,144	95.5%
지방교부세		161,589	161,589	-	-	-	100%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7,880	7,880	-	-	-	100%
보조금		119,568	119,568	-	-	-	100%

5.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서 p31)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B)	이월액(C)	불용액 (D=A-B-C)
계	379,248	352,877	326,650	39,466	13,132
의회운영위원회	1,006	937	937	-	69
총 무 위 원 회	186,086	172,729	168,163	10,515	7,408
산업건설위원회	192,156	179,211	157,550	28,951	5,655

[총무위원회 소관]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소 계	186,086	172,729	168,163	10,515	7,408	
기 획 감 사 실	9,164	7,415	7,373	42	1,749	
주 민 생 활 지 원 과	53,424	52,064	51,262	800	1,362	
행 정 과	44,773	42,486	41,978	500	2,295	
재 무 과	6,222	6,168	6,167	3	52	
민 원 봉 사 과	681	653	653	0	28	
문 화 관 광 과	29,221	26,583	23,552	5,193	476	
1 0 1 0 추 진 단	22,193	18,087	17,944	3,945	304	
보 건 소	7,427	6,829	6,825	1	601	
교 육 문 화 센 터	1,444	1,406	1,406	0	38	
수 승 대 사 업 소	321	284	284	0	37	
읍 면	11,216	10,7544	10,719	31	466	

6.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사용 현황(결산서 p315)

이 용: 해당 없음

전 용(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6 건				31,425,834	1,457,550	1,457,550	
주민생활 지원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업무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0,172	2,000		장애인 복지대 회의 원활한 추진
		장애인 행사 지원	307-04 민간행사보조	32,000		2,000	
주민생활 지원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 행사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3,500	3,150		"
		장애인 행사 지원	307-04 민간행사보조	34,000		3,150	
행정과	기타	인건비	101-01 보수	27,036,146	1,400,000		법정경 비인 공무원 연금부 담금 납부
		인건비	304-01 연금부담금	3,109,532		1,400,000	
문 화 관광과	관광	관광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7,172	12,400		신축관 광펜기 구입
		관광활성화 지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400	
문 화 관광과	관광	관광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4,772	10,000		문화관 버스민 간위탁 운영금
		관광활성화 지원	307-04 민간행사보조			10,000	
문 화 관광과	체육	체육행사 및 활동지원	201-03 행사운영비	140,000	30,000		제43회 전국남 녀학생 종별탁 구대회 원활한 추진
		체육행사 및 활동지원	307-04 민간행사보조	998,600		30,000	

【검토의견】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이 체: 해당 없음

7. 계속비 결산(p325)

(단위: 천원)

재원	사업명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9,531,502	9,531,502	7,836,778	1,499,718	195,006
국고 보조	거창문화원 건립	4,522,078	4,522,078	3,927,158	594,876	44
국고 보조	무형문화재 전수 지원	954,768	954,768	49,881	904,842	45
국고 보조	거창국민체육 센터 건립	4,054,656	4,054,656	3,859,739	0	194,917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관리하며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며,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 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무형문화재 전수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94.8%로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하므로 향후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

8. 다음연도 이월사업(결산서 p347)

(단위: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이월액	비 고
명시이월	계	86	69,510	20,058
	일반회계	82	63,770	19,123
	특별회계	4	5,740	935
사고이월	계	90	90,628	14,095
	일반회계	80	80,541	13,253
	특별회계	10	10,087	842
계속비이월	계	9	35,925	12,709
	일반회계	7	20,112	7,090
	특별회계	2	15,813	5,619

【검토의견】

-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2010년도 예산이월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이 86건 20,058백만원, 사고이월이 90건 14,095백만원, 계속비이월 9건 12,709백만원으로 시기미도래, 공기미도래(부족), 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 되었음.
- 이는 전년도 대비(명시이월 78건 19,078백만원, 사고이월 65건 14,569백만원)집행실적이 부진한 상태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IV 예비비 결산(결산서 341)

(단위: 천원)

세부	지출사유	지출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2 건	81,631	81,631	81,631	0	0
소송 관리	소송사건공탁금	36,631	36,631	36,631	0	0
소송관리	소송사건공탁금	45,000	45,000	45,000	0	0

【검토의견】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예비비)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본예산에 일반회계의 1/100이상을 계상하여야 하며, 지출결과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1백만원으로 소송사건공탁금으로 집행하였음.

V 기금결산(결산서 p441)

(단위: 천원)

종 류 별	전년도말잔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잔액 (D=A+B-C)
		수납액 (B)	지출액 (c)	
합 계(8건)	3,582,718	315,084	142,611	3,755,191
아름예술제진흥기금	500,433	19,672	19,000	501,105
체육진흥기금	50,336	1,914	0	52,250
식품진흥기금	17,309	3,679	13,211	7,777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516,131	19,772	20,800	515,103
노인복지기금	1,027,421	32,683	14,500	1,045,604
여성발전기금	1,013,586	41,570	22,100	1,033,056
기초생활보장기금	311,360	152,764	0	464,124
생활안정기금	146,142	43,030	53,000	136,172

【검토의견】

- 2010년말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3,582,718천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315,084천원이며 지출액은 142,211천원으로 차인잔액은 3,755,191천원임.
- 당해연도 지출액이 전혀 없는 2개기금(체육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

금)은 조성 목표액 도달까지 기금조성 단계에 있어 당해연도 지출액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VI. 채권액 결산(결산서 p477)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잔액	
합 계	4,699,930	1,823,770	1,489,715	5,033,985	
일반회계	3,970,018	164,645	525	4,134,137	
특별회계	소 계	485,743	1,490,281	1,348,545	627,479
	농업발전기금	110,541	6,750	5,484	111,807
	산업단지 조성사업	375,202	1,483,531	1,343,061	515,672
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244,169	168,844	140,645	272,368	

- 2010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의 채권액은 5,033,985천원으로 이행기간 미도래액은 4,604,088천원이며, 이행기간 도래액은 429,897천원임.
- 이 중 이행기간 도래액 429,897천원은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VII. 보조금 결산(본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58,192,212	157,799,266	135,174,856	19,483,261	3,141,109	
일반회계	156,468,694	156,102,040	133,480,749	19,483,261	3,138,030	
특별회계	소 계	1,723,518	1,697,186	1,694,107	0	3,079
	의료보호 기금	192,410	169,506	169,506	0	0
	수질개선	1,531,108	1,527,680	1,524,601	0	3,079

【검토의견】

- 2010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157,799,226천원이고 예산액 158,192,212천원 대비 99.8%이며, 집행액은 135,174,856천원으로 예산액의 85.5%이며 19,483,261천원이 이월되고 3,141,109천원을 반납하였음.
- 일반회계 군비부담액은 51,339,253천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수령액)에 대하여 32.6%에 해당함.

VIII 기타 검토의견

-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우리 군이 표방하고 있는 군정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가지고 재정적 수입과 지출이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책임해제와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지도 및 예산안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할 때까지 시정조치가 가능한 사항들은 시정하고 시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결산자료와 함께 제출함이 타당하나 관례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 이 밖에도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방향을 보면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 경제위기 이후 신 지역 성장 잠재력 선점,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안정성 확보 등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지방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예산현액의 15.2%인 65,976백만원이 이월되어 28,771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매년 실시되는 결산검사 에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 제도개선이나 보다 많은 자체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